
 <p><b>국토교통부</b>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	<b>보 도 자 료</b>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배포일시	2015. 5. 27(수) 총 11매(본문3, 참고8)	
담당 부서	운항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장만희, 사무관 위은환, 주무관 장여진 • ☎ (044)201-4244, 4248, 4250
보도 일시		2015년 5월 28일(목)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7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무인비행장치(드론),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!

“조종자 준수사항” 지키며 날려야 불이익 없어

### [사례 1]

◇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(32세, 男)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교생인 아들 길남 군(10세)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.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. ⇨ 사유 :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

### [사례 2]

◇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(45세, 女)씨는 △△△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.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.

⇨ 사유 :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

### [사례 3]

◇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(21세, 男) 씨.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.

⇨ 사유 : 비행금지시간대(야간) 미준수

-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(드론)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.
-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「항공법」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.
  - \* 법규위반 적발건수 : 6건('10년)→ 8건('11년)→ 10건('12년)→ 49건('14년)  
(자료출처 : 수도권방위사령부)
  - \*\* 국토교통부는 「항공법」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('99.2),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('12.7), 자격증명 도입('13.2)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옴
- 「항공법」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  - 이 내용은 장치 무게, 비행 목적(취미용·사업용)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.

**< 조종자 준수사항 (항공법 제23조, 시행규칙 제68조) >**

△ 비행금지 시간대 : 야간비행 (\* 야간 :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)

△ 비행금지 장소

- (1)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.3km 이내인 곳  
→ “관제권”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
- (2) 비행금지구역 (휴전선 인근, 서울도심 상공 일부)  
→ 국방,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
- (3) 150m 이상의 고도  
→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
- (4)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(\* 예 : 스포츠 경기장,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)  
→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

▶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 
(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)

△ 비행금지 행위

-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,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
-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
(\* 예 : 안개·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,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)



※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 Q&A 참조 (참고 2 자료)

- 이와 별도로,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, 촬영용,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”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.
-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, ②야간비행,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.
-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,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, 관계당국\*의 조사를 거쳐 벌금·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.

\* 조사수행기관 : 국토교통부(지방항공청), 군, 경찰 등

<주요 법규 위반행위>		<처벌·처분기준>
조종자 준수 사항 위반	비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	⇒ 200만원 이하 과태료
	야간비행	
	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	
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		⇒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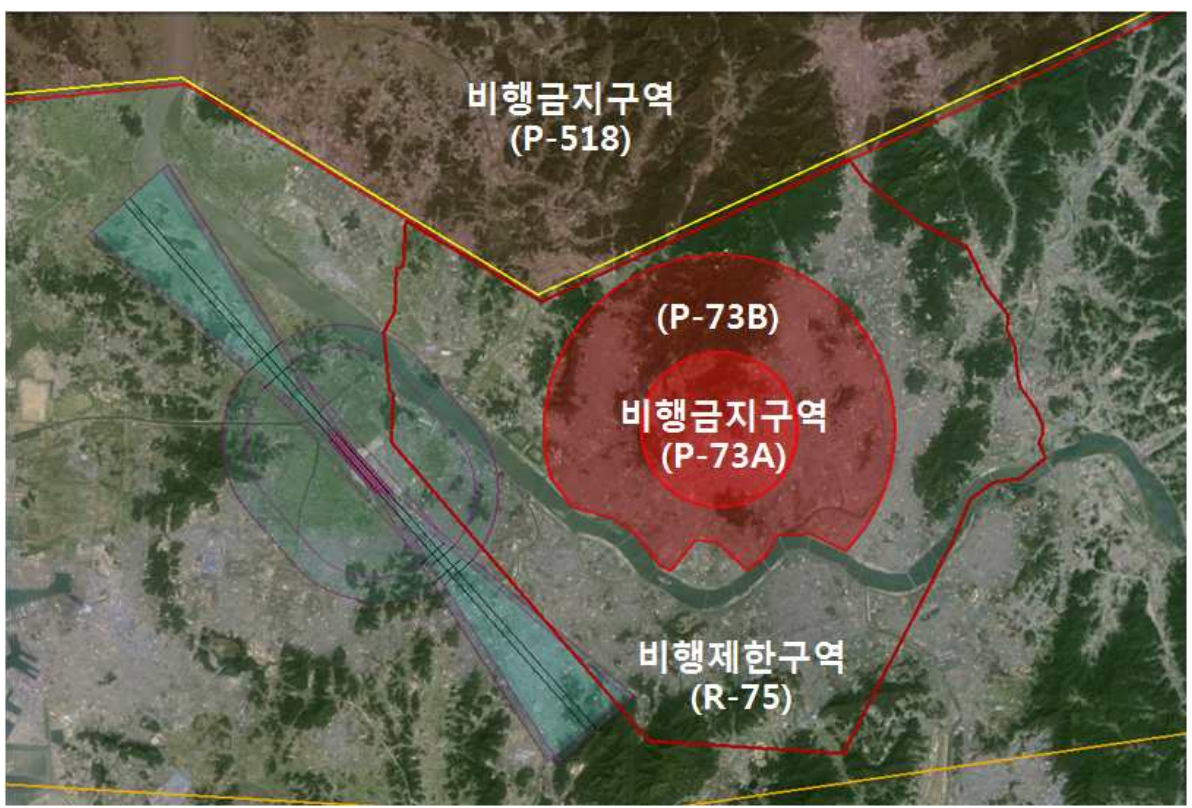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위은환 사무관(☎ 044-201-42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

**참고 1**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

□ 비행금지구역(적색 표시구역) : 휴전선 일대(P-518), 서울도심(P-73)



※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



Q 1. '무인기'는 잘못된 표현이다?

A 1. Yes (O)

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. 「항공법」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'무인비행장치'로, 150kg 초과 시에는 '무인항공기'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.

Q 2.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?

A 2. No (X)

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.

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

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,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([www.onestop.go.kr](http://www.onestop.go.kr))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.

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 3.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?

A 3. No (X)

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.

**Q 4.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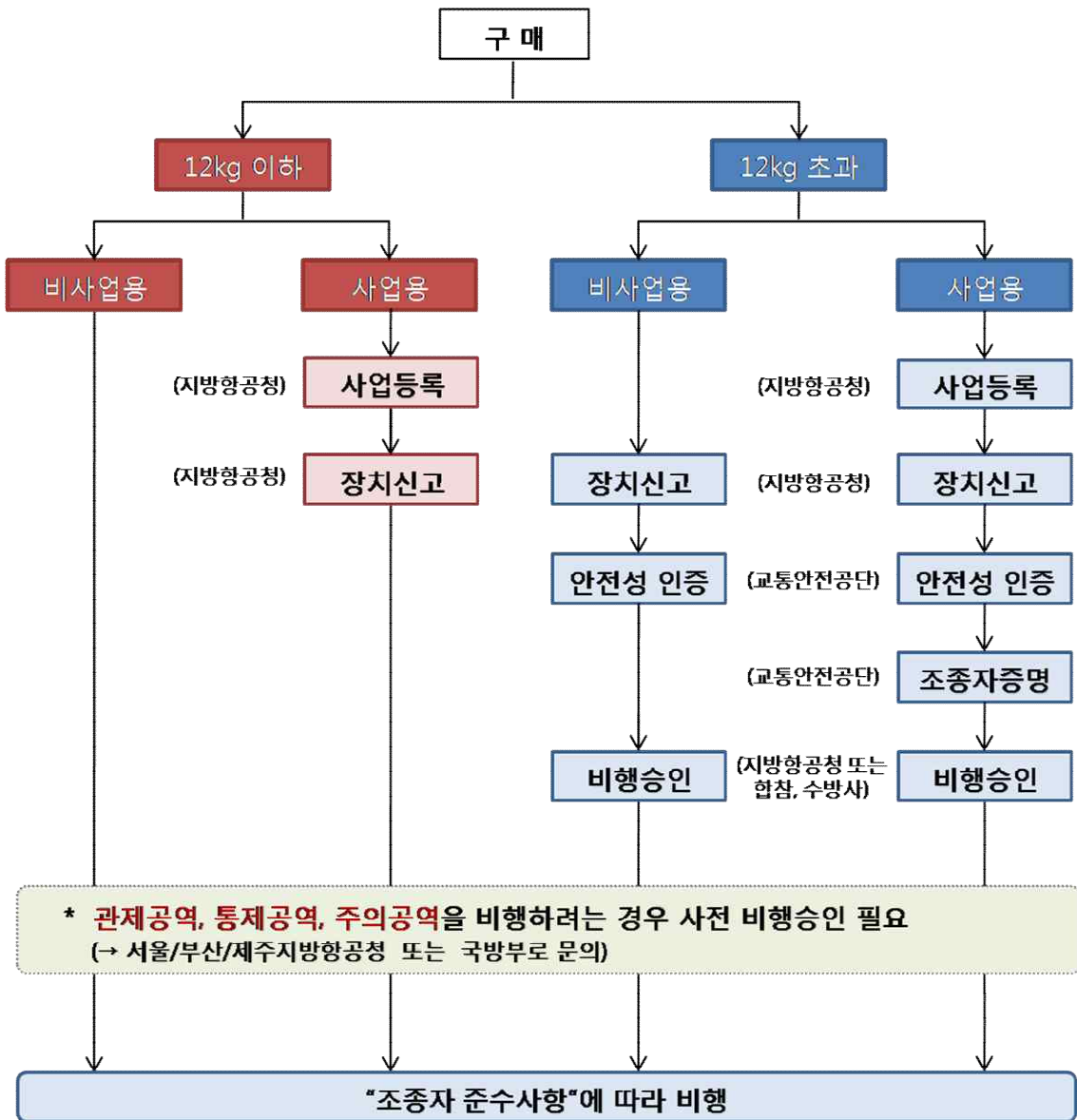
**A 4. Yes (O)**

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“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”으로 구분하고,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, 사진촬영, 육상·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, 산림·공원의 관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, 인력,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
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,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Q 5.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.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?**



※ 추가문의

-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: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32-740-2147)  
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51-974-2145)
- 안전성인증 :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(054-459-7394)
- 조종자증명 :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(054-459-7414)
- 비행승인 :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32-740-2353)  
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51-974-2153)
- 공역관련 :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(092-740-2185),  
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(051-974-2206)
- 국방부 : 콜센터 1577-9090, 대표전화(교환실) 02-748-1111,  
수도방위사령부(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) 02-524-3413, 3419

□ 사업 정의 (근거 : 항공법 제2조제44호,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)

○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\*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,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

\* 무인(無人)비행장치 :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

-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: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
- ② 무인비행선 :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

<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>

가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

나. 사진촬영,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

다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
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□ 사업등록 기준 (근거 :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3의3)

구 분	기 준
1. 자본금	가. 법인: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. 개인: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
2. 조종자	1명 이상
3. 장치	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
4. 보험가입	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, 계류식 기구는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

비고:

가. 위 표 제4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.

나.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처리기관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항공청

※ (기타사항)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 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령” 참조



항공법	시행령	시행규칙
<p>제23조(초경량비행장치 등)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)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·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</li> <li>2. 계류식(繫留式) 기류류(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</li> <li>3. 낙하산류</li> <li>4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</li> <li>5.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(無人回轉翼)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</li> <li>6.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</li> <li>7. 연구기관 등이 시험·조사·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</li> <li>8.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</li> </ol>	<p>제68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)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(投下)하는 행위</li> <li>2.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</li> <li>3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·통제공역·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</li> <li>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(無人回轉翼)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</li> </ol> </li> </ol> </li> </ol>

		<p>하인 것</p> <p>2)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</p> <p>4.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</p> <p>5.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</p> <p>6.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7. 「주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(이하 "주류등"이라 한다)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</p> <p>8.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</p> <p>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</p>
--	--	---

		<p>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.</p>
<p>제141조(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)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,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2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/ol>		<p>제16조의3(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)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개정 2013.3.23., 2014.7.15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인비행장치: 다음 각 목의 사업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</li> <li>나. 사진촬영,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</li> <li>다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</li> <li>라. 조종교육</li> <li>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 </li> <li>2. 삭제</li> </ol> <p>제313조(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)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3의3과 같다.</p>